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10.17008/skklr.2021.33.2.009
제33권 제2호 (2021. 6.)
Sungkyunkwan Law Review Vol.33. No.2 (June 2021) pp 267 - 295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소고

김재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유형
Ⅲ.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
Ⅳ.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강화를 위한 제언
Ⅴ. 마치며

【국 문 요 약】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온라인 상의 세상으로 확장되어 멀티미디어에 의한 정보유출과 뉴스의 재생산은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와 신변보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통신망의 융합,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심각성이 커짐에 반해, 뉴미디어환경에 따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역시 주요한 기본권으로 강조되어 양자의 기본권적 충돌과 피해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제3차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기본계획(2017~2021년)’도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형사절차 참여권리와 함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를 큰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정보유출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보장에 대한 정책적 방안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교양학부) 조교수, 법학박사(형사법)

을 제언해본다.

Ⅰ. 들어가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신변안전과 프라이버시권을 떠올리게 된다. 먼저 신변보호는 피해자의 정보유출에 따른 보복범죄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요구된다. 1990년 조직범죄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함)」이 제정되고[1], 이어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특신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신변보호제도가 본격화되었다.[2]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이처럼 보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하다면, 오늘날 대충매체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확산됨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도 피해자의 보호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신체의 안전과 달리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생활자유, 사생활비밀의 향유라는 점에서 양자의 접근과 보호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이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영역에서 보호장치에 해당하는 훌륭한 지침과 권고안 등이 존재하며 법제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도 3차에 걸쳐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보장을 정책목표로 수립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의 호소가 멈추지 않는 이유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프라이버시권의 기본권적 성격과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경

---

1)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피해자학연구」(제24권 제1호), 2016. 4, 127면.

2) 박광민, 전게논문, 127면.

우 신변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유기적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특징과 유형을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또 언론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침해유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현행의 제도와 정책적 노력들을 살피고, 발전 방안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제도적 보장과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정보유출에 대한 범죄인식 강화, 관련 법제홍보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제안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침해유형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써 초기 프라이버시권

사생활권 일명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당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3]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문의 규정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선언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각종 정보의 범람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처음 인정되었던 권리보다 그 적용영역과 내용이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다른 기본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권리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헌법상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의 핵심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침해되는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침해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한 윌리엄 프로서(William. L. Prosser)의 분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치 않는 사적 사실을 공개해 당사자를 당혹스럽거나 민망하게 만드는 것, ② 개인이 누리는 안위에 대한 침입, ③ 공중이 오인하도록 보도하거

3) 석인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3. 249면.

나 기사내용의 일부에 대한 강조·삭제로 개인에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④ 타인의 이미지, 성명, 음성, 초상 등의 상업적 남용[4]이 그것이다. 이러한 침해의 유형에 상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주장하게 되는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및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과 같은 방어적 권리로 이해된다.

나.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오늘날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프라이버시권의 내용도 변화시켰으며 그 성격도 '자기정보의 관리 통제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로 확대시켰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본격적인 SNS시대에 접어 들게 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패러다임에 전환기를 맞게 하였다.[5] 향후에도 기술발달과 함께 그 내용 역시 진화하여 갈 것이다. 이처럼 프라이버시권은 외부나 정부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홀로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협상의 대상인 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 개념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6] 이때 자기정보 즉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

---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lliam. L. Prosser, Handbook of the Law of Tourts, 4th ed., west Pub. Co, 1971.;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147면 재인용.

5) 성중탁,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동향과 발전 과제", 「IT와 법 연구」(제16권), 2018. 44면.

6) 권오성, "프라이버시, '홀로 있을 권리'에서 '사회적 협상 대상'으로 변화", 한겨레신문, 2020. 5. 22.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09844.html

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힘으로써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7]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변화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16년 4월 27일 유럽의회 및 EU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2018년 5월부터 시행)'을 가결하였으며, 이 규칙은 구속력을 가져 모든 구성국에 직접 적용[8]한다. 그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a.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b. 목적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는 특별한 목적으로 처리·유통되어야 한다는 것, c. 정보내용 정확화의 원칙, 비례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d. 투명성, 안정성의 원칙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과 관리주체에 관련된 공정성와 정보처리 상의 위험예방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9]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망의 사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가. 신변보호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범죄피해자의 보호의 측면에서 보복범죄와 2차 가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보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보장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소극적, 방어적인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서 이제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권은 초기 혼자있을 권리와 개인 안위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중시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현대 프라이버시권은

---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판결; 성중탁, 전게논문, 45면 재인용.

8) 이형석,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법이론실무연구」(제6권 제1호), 2018. 02. 40-41면.

9) 이형석, 전제논문, 53~57면.

자기정보의 통제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사생활 및 사생활자유의 비밀과 불가침은 보복범죄 혹은 2차 가해로부터 보호의 필요는 중요한 보호의 영역이며 또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자기정보의 통제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영역만을 강조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박광민 교수는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정보보호 분야와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기존 기본계획에서 양자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다.[10] 일반의 개인정보와 달리 범죄피해자 정보보호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침해는 더 현실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11]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는 신변보호의 출발점이며 내실화를 위한 전제이므로 실질적·실효적인 신변보호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와의 연계강화가 필수적이다.[12]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5개년 단위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법제가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피해자의 정보유출이 가져오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특히 개인의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의 대응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더욱 깊숙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일부가 되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보호와 아울러 정보통제권의 적극적·능동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나.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범죄피해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사생활권을 가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서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내용을 한다면, 2세대 프라이버시권

10) 박광민, 전게서, 142면.

11) 박광민, 전게논문, 142면.

12) 박광민, 전게논문, 142면.

은 헌법재판소의 결정[13]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에 의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권리이다.[14] 나아가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또는 Data Privacy)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15]로 정의된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과 전파가 매우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까닭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는 상당하다.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전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개인정보의 대량적 처리는 법률적,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예컨대,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성에 의한 2차 가해 등). 아울러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한 정보로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개인적 사실도 고도로 민감하고 사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범죄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정확하다 할 지라도 부주의하게 유포될 경우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16] 그러므로 정보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내용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권, 동의 철회권, 정정 및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열람, 확인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7]

그런데 수사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언론 보도상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재판상 '진실의 소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침해당할 위험이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및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소지를 높인다.[18] 물론 해당 기관이 당사자들에게 준수되어야

1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1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5. 15면.

15) 국가인권위원회, 전게서, 19면.

1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2면.

17) 국가인권위원회, 전게서, 20면.

18)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는 신체·생명의 피해로부터 복구와 정신적 안정을 통해 일상으로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One Stop 맞춤형 통합지

할 비밀보장의 의무와 보호장치가 존재하나 여전히 침해의 위험은 잠재되어있다. 또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규정과 함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동법 제37조 제2항). 이때 공익의 목적에 국민의 알권리가 언론보도, 표현의 자유와 함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공인이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동일한 알권리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물어야 할 것이다. 즉 침해되는 공익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사이에 정한 이익을 향유하고 모범을 요구받는 공인과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한 유책성과 또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의 양을 산정해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은 다르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부터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이익과 공익을 저울질하여 비례성을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유형을 살피고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개인의 안전·건강·일상생활유지·사회적 관계·경제·교육·고용·생활환경·법률·권익보장 등 사회보장 10개 영역의 통합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는 통합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촉진하고자 공공과 민간단체 간 통합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연계활성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 대응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2차 기본계회에 의거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공공과 민간단체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단체간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소지가 높아진다. 법무부, One Stop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업무안내, 2017. 3~4면.

3.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가.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특성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의 요구와 함께 거론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특성은 확장과 재생산의 위험을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가족 등)에게 그 피해가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보장을 위한 대책은 피해유형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보사회로의 사회의 변화는 피해자에 대한 침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혹은 보복범죄 등에 대한 침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의 유형으로 '수사나 재판, 보호, 치료, 언론,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와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폭언, 그 밖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생을 가져오는 행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입은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19] 정보통신망에서의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과 성희롱성 표현, 추측성 비난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한 활동영역이 되고 있어서 수사기관들도 인터넷 상 수사기법의 개발과 이를 통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인터넷 포털들 역시 이전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법원의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이름, 주소, 인터넷 접속시간 등 인터넷 이용자가 읽고 작성한 이메일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20] 때문에 수상절차 상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와 피해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

19) 최민지,“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실태”, 「관훈저널」(제62권 4호:2020 겨울호), 2020. 133면.

20)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9. 162면.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절차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의정부지법 '레깅스 사진'판결문을 다룬 기사는 대표적인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지법 관할에서 작성된 판결문 7개에서 모두 153장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밀집장소에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남성은 어떤 여성 사진을 찍은 뒤 2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달아 찍었다. 이 사진도 모두 판결문에 그대로 실렸다"[21]고 보도했다. 해당 법원이 재판상 사건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영구보존되는 판결문에 공개된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진은 피해자의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부족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의 부재 혹은 지침의 미준수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 뉴스생산환경과 선정성의 관계

언론기관으로부터 인터뷰나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하는 방식과 정보제공자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보도이전과 이후 등 단계별, 피해자의 특성별, 보도별, 사건발생 및 수사·재판 등 사건의 진행 상황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보의 노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매뉴얼의 마련과 함께 동 매뉴얼의 홍보와 공개로 일반인들에 의한 언론의 감시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 매뉴얼의 준수요구 등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 조하나, 안세연 기자, "가해자는 가려주고, 피해자 정보는 공개하는 이상한 판결문", 로톡뉴스, 2019. 11. 18. https://news.lawtalk.co.kr/1428

22)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제16권 제1호), 2015. 457면.

성범죄 등 젠더폭력 등의 피해자 중심의 동 매뉴얼은 중범죄 등의 피해자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적되는 것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보보호의 문제가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도 관련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공개되는 보도가 인터넷의 보급과 SNS의 활성화 등으로 빠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심각할뿐만 아니라 설령 사후적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23]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신변안전의 위험을 제공하는 것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보도의 지침과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정보유출의 사례와 잠재적 언론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고 나아가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는 특징에 의해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고통을 준다. 예컨대 故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피소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대중매체에 의해 정보가 공개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피해자중심의 사건의 특정이나 네이밍이 가져오는 침해 외에도 언론기관의 한 피해자 프라이버시침해는 매우 다양하다. 진주방화사건(아파트에 방화를 한 뒤 아파트를 탈출하는 주민을 차례로 상해·살해한 사건)처럼 범죄피해와 관련된 특정 지역의 공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지역 주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최근 언론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언론기관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2차 가해[24]로 표현되는 점도 이러한 피해의

23) 강동욱, 전게논문, 453~454면.

24) 최민지, 전게논문 ;김효실, “미투 속 언론, 언론 속의 미투 - 2차 가해행위보도 멈추고 대안 담론 매개 역할 해야 하지만...”, 한국방속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18.

확대와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미투 운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분석한 연구의 경우를 보면, 뉴스생산 환경이 보도의 선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하면서 사건 중심의 지상파뉴스에 비해 사람 중심의 종편보도에 의한 침해가 높았다는 점에서 보도의 방식, 뉴스 환경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하였다[25].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등에 의한 피해자정보의 유출

최근 피해자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는 등 피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또 언론기자와의 유착(예컨대 수사기관과 언론기자의 유착 등)으로 쉽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실제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가 이처럼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례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경기도에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및 삭제를 전담하여 지원하고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개소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26]

자율적 프라이버시권과 밀착형 신변보호의 필요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정보의 지원기관 간의 공유 문제도 이러한 피해지원 전담기구의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 기타 다양한 지원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네트워크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5) 홍주현, “미투 운동에 나타난 방송 보도의 선정성과 방송의 선정성 해결방안 모색-가해자 위계와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보도의 질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5. 13-60면.

26) 경기도 홈페이지 홈>뉴스포털>보도자료>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5424 (검색일 :2020. 12. 02)

마.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피해자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만큼 심각한 침해유형으로 정보통신망 특히 유투버 등 개인인터넷방송에 의한 침해유형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지게 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영역과 전파력의 힘은 훨씬 커졌다. 초기 정보통신망의 영역이 형성되던 때 개인의 정보수집 능력에 기반한 특정인의 신상공개(일명 신상털기)의 수준은 정보통신망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했다. 상술한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의 경우 언론기관의 자정적인 자제의 노력과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필터링을 통해 침해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것에 반해 반대로 개인에 의한 정보통신망 속 무분별한 침해사례와 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의 목적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더욱 자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정보유출사례들을 보면, 사실확인 보다는 정보원의 제보나 심각한 경우 추측성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등 보도의 신속성과 독점 중심으로 내용의 선정성과 인지도 중심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게시는 뉴스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언론기관에 의한 보도와 거의 대등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2차피해의 원인이 된다.

Ⅲ.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

1. 정책적 노력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또는 제3자인 사인에 의해 위법한 가해의 위험이 존재할 때, 이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한다. 국가의 기본권 수호의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가 과소보호되어서는 안된다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준수[27]를 요구한다. 과소보호여부의 판단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저한

27)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제11권 제4호), 2010. 48면.

의 보호수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정도에 있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28]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현행의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특히 인간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에 대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5개년 주기로 법무부가 발표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차 기본계획(2007~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 총 3차 기본계획(2차-2012~2016년, 3차-2017~2021년)을 수립,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정책목표로 기본시책의 한 장으로 하여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차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3대 기본시책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제시하고 형사절차상 2차 피해 방해방지,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 신변안전 보장을 세부시책을 내걸었으나 피해자의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위한 세부과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어 2차 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로 대상을 넓히고 있는데 이는 언론 및 정보통신망 등에서 일어나는 대상자의 확장과 가해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제3차 기본계획은 기존 3대 기본시책을 5대 정책영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정보와 신변보호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추진과제의 수립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은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정보공개금지 및 정보공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 수립을 세부추진과제로 삼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의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29] 기본계획의 영향으로 해당기관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수립하고 특히 언론기관에서도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와 프라이버

28)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29) 법무부 인권구조과, 제1차, 2차, 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참조.

시권의 침해상황에 대처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

먼제 피해자의 정보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으로 특히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 중 지득한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경우(제3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8조). 이 외에도 특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제38조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그 주체를 일반인 모두로 확대하여 피해자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31] 「청소년성보호법」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수사 또는 재판 담당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에게 비밀엄수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밀엄수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32]

3. 언론기관의 보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

제1차 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양한 정책추진의 노력과 함께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33], 2012년 '성폭력

---

30) 이와 관련하여 류병관 교수는 현행법상 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제18권 1호), 2010. 4. 266~268면 참조.

31) 2020년 10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2항이 개정되어 동 법률상의 피해자정보 공개죄 법정형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32) 박경규,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유포행위의 방지", 2021년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21. 5. 103~106면.

33) 2011년 9월 제정한 '한국기자협회 언론보도준칙'은 이후 2014년 12월 보다 구체적인 주요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34]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의 목표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언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사건보도 실천요강'(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을 마련하는 등의 자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5]

현행 언론기관의 보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의 내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36] 그러나 보도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와 경제적 이익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언론기관의 2차 가해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Ⅳ. 범죄피해자 프라이버시권 보호강화를 위한 제언

1.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제도적 보장

헌법재판소는 제17조 프라이버시권과 제10조 인간존엄권을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 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판단하였다.[37]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밝히

분야별 보강한 상세한 내용으로 보강하였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최종 방문일: 2021. 05. 30.)

34)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최종 방문일: 2021. 05. 30.)

35) 김효실, 전게논문, 23면.

36) 김효실, 전게논문, 23~24면 참조.

면서 동 판결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결정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밝혀주고 있다.[38] 이와 관련되어 특히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정보의 주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고, 영장발부에 대하여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39]의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2조 제1항). 이러한 점에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40]는 점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41]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경우 재판상 압수·수색영장의 기본권 침해 혹은 불법을 이유 증거능력의 부정 등 다툴기회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의 경우 더더욱 침해의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인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술한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최소보장의 의무로부터도 구제방법의 마련은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된다. 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사후에라도 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42]이 법률상·공식적 절차상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및 해당기관 대응 매뉴얼 강화

가장 대표적 범죄피해자지원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종사자들과 직원들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가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에 위탁

37)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38) 허순철, 전게논문, 170면.
39) 대법원 1997.9.29. 결정 97모66.
40) 허순철, 전게논문, 177면.
41) 허순철, 전게논문, 177면; 허영, 헌법소송법원, 박영사, 2008. 40면.
42) 허순철, 전게논문, 178면.

하는 형태로 매년 필수 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이 진행된다. 이때 필요한 법률정보와 피해자관련 정보가 교육컨텐츠로 구성되는데, 해당교육에 개인정보결정권 및 침해발생시 구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방식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관계기관자의 정누설이 범죄란 점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언론 대응 매뉴얼' 등의 교육이 강화되어 피해예방과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 중심으로 이러한 매뉴얼의 구축과 기존 매뉴얼의 숙지와 모니터링에 의한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보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지원기관으로써 역할과 함께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범죄 인식강화 및 법제의 홍보

기존 법제적 노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법상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범죄로써 규율하고 상응하는 형벌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유출관련 범죄의 내용은 일반시민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다. 심지어 사법부의 실제 유죄선고 및 처벌사례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43] 해당 법제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 처벌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정보유출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보유출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특정에 의한 표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2008년 나영이사건, 2009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등에서 이미 보았듯이 피해자를 특정한 사건의 보도는 피해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특정한 키워드를 통한 피해자의 소위 신상털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영이사건은 조두순사건으로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사건네이밍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유사한 사례가 최근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44],

43) 보다 자세한 처벌사례와 현황에 대하여 박경규, 전게학술대회 자료집, 109~110면 참조.

44) 해당범죄의 경우 신안 흑산도 섬마을이란 지역명과 해당 시기 섬마을에 부임한 초등학교 여교사라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특정지역과 상황은 쉽게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실제 해당사건에서 피해자인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은 가해자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의 악의적 댓글이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지나친 호기심과 동정심은 다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들이 제2차 가해임을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원연합회가 매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며, 지자체와 국가적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등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도 통한다.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은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하루아침에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우며, 먼저 이러한 사고의 전환 등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는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드라마 속 PPL광고처럼 수사나 취재 및 재판 등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다루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45]

4.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제안

현행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의 대상자는 주로 범죄피해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여교사의 신상털기를 시도한 특정 포털사이트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코리아헤럴드, "일베, 흑산도 성폭행 피해교사 신상털기 시도로 경찰에 수사", 2016. 6. 16.일자 신문기사. http://news.koreaherald.com/view.php?ud=20160616000318&md=20160619003922_BL&kr=1

45)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최근 범죄피해에 대한 복수를 담아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 제작진과 협의하여 자막브릿지의 형태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와 연락처(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시도 또한 참고해볼만 하다(SBS드라마 "모범택시", 5회(2021. 4. 23. 금. 22시 방영), 6회(2021. 4. 24. 토. 22시 방영) 방송말미 자막브릿지 방송).

같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피해자정보의 유출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으로 확산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이는 범죄피해자의 정보유출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등에서 정보의 유출현상으로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인과 가해자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보호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46]고 밝히고 있다. 즉 상황과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등으로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의 영역에서 1차 기본계획의 보호대상을 범죄피해자로 보았던 것을 2차 기본계획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으로 정책추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경우 제3조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직접적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제3조 1항 1호)하면서, 신변보호 의무(제9조)와 비밀누설죄(제39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은 범죄피해자의 범죄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의 존재를 확인(제2조 제1항)하면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의 보호(동조 제2항)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동법 제4조, 5조)와 함께 국민의 책무로써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제6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자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종사자로 제한하

4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법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별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형과 해당범죄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동법이 모든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에 협조할 것과 및 프라이버시권침해 금지를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밀누설죄의 주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종사자에 대한 업무에 해당한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정형의 상향과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의 것으로 두는 입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②현행과 동일) ③(신설) 피해자는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하는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 유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침해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현행 본문과 동일 ②(신설) 누구든지 제1항의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제48조(벌칙)** ① (현행 본문을 제1항으로 그중 제1호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현행과 동일) ②(신설)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다른 법률에 정한 벌칙이 있는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다.

5.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보도환경개선

언론기관의 자정적 노력으로 제정된 다양한 지침과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루어진 미투 운동과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언론 보도의 상황은 피해자보호나 프라이버시권의 존중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언론의 건강한 역할에 해당하는 사건의 사회적 문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파악보다 사실 확인에 앞서 정보원의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급급했다.[47] 피해자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성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2018년 발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은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현행 마련되어진 언론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만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및 보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의 문제는 이러한 지침 등의 구축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자 개인에 대한 기사작성의 지침이나 실천요강 외에 보도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지침의 구축보다 지침의 준수 및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쟁적 보도나 필터링 없이 복재된 재보도의 지양 등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의 제정보다 가이드라인의 준수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Ⅴ. 마치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범죄에 의해 직접 침해된 보호법익 이외에 신변의 안전과 평화로운 사생활을 누릴 권리 그리고 명예를 침해받는다. 피해자들은 이미 발생된 범죄피해보다 이후 가해지는 여론과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곤 한다. 법무부가 5개년 단위로 발표하는 기본계획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신변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도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전에서 평화로운 사생활을 누릴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지원에

47) 홍주현, 전게논문, 29면.

관한 내용으로 점진적 확대·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문지면에서, 연구논문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현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헌법 17조의 기본권의 의미와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살펴보았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은 신변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을 위한 정책 및 다양한 지원법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물론 개별 피해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책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며, 실제 성범죄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법제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범죄에만 국한된 피해구제책인 아닌 기본권침해적 차원에서 모든 피해의 구제와 침해예방을 논의하고자 하여 구체적인 범죄별 언급을 생략하였다.

우리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신변보호와 정보보호로 분류하여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라고 하는 수혜적 해택 혹은 서비스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이해한다면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른 한편에서 수반되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상존하게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신변과 사생활의 평온을 향유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은 기본권이라는 것, 그러므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기본권으로 그 내용과 영역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범죄피해자에게 논의되는 즉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최소보장”의 의미로 현행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피해의 회복만큼 피해자의 신변의 안전을 바탕

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향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 법제 마련만큼 사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도 주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논문투고일: 2021. 5. 31, 심사개시일: 2021. 6. 11., 게재확정일: 2021. 6. 23)

김재희

범죄피해자의 정보공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중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참 고 문 헌】

Ⅰ.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5.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이재진, 「언론과 공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Ⅱ. 논문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제16권 제1호), 2015.

김효실, "미투 속 언론, 언론 속의 미투 - 2차 가해행위보도 멈추고 대안 담론 매개 역할 해야 하지만...", 한국방속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18.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제18권 1호), 2010. 4.

박경규,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유포행위의 방지", 2021년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21. 5.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4.

석인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3.

성중탁,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동향과 발전 과제", 「IT와 법 연구」(제16권), 2018.

이형석,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법이론실무연구」(제6권 제1호), 2018. 02.

허순철,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제10권 제2호), 2009.

Ⅲ. 판례

대법원 1997.9.29. 결정 97모6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판결.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of Crime Victims

Kim, Zaehee

In the event of a crime, the victim is infringed on his or her right to per-sonal safety, peaceful privacy, and honor,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law di-rectly violated by the crime. Damage that has already occurred cannot be re-versed, but secondary damage that occurs thereafter can be prevented or reduced.

Starting with the 1985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for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it urged attention to the judicial status and rights of victims. Since 2005, we have established “the Project of the Realit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on a five-year basis to prepare and implement policies. This project also calls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crime victims and protecting and supporting privacy rights, which are the right to enjoy safe and peaceful privacy.

Nevertheless, we are often exposed to the status and problematic cases of secondary damage to victims in our papers, in our research papers.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basic rights in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called privacy rights, and the right to privacy that is meaningful to victims. In that the victim's privacy rights should be protected, the government reviewe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privacy rights and various support laws. Then, discussions were hel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curity and privacy rights of future victims.

Kim, Zaehe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victims of crime, Victim's right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by the media.